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제개443.2- (전화번호 720-4627)	결구청사 장	조 1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82.11.		
보존년한	영 구		
보조 기 관	부시장	전결	
	도시계획국장	협범무담담관 (도시계획국장)	
	재개발과장	도시계획과장	
기안책임자	김진환	82.11.18	조
경유 수신 참조	과안참조	발신 시장	동계
제목	도시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고시		
(제1안) 내부 결재			
1. 당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심재개발구역중 을지로 2가구역, 마포토제1구역제5지구 및 16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당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, 범침 회의록과 같이 삼의 의결되었기 도시재개발법제5조, 동법시행령제7조 및 도시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법안과 같이 고시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(제2안) 고시(안)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도시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고시	
1. 서울도시재개발사업 을지로 2가구역, 마포토제1구역제5지구 및 16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5조, 동법시행령제7조 및 도시계획법제12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고시 심사 1982.11.18 제 209 호 담상관 법개발과장 범무담담관 727 </div>	

2. 관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 구청
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11. 22

서울특별시장

가. 을지로2가 구역

1) 지구별 조서

지구명	위 치	면 적	비 고
1	중구삼각동 66-1번지일대	6,771 [㎡]	
2	" 남대문로 1가 19"	2,919"	
3	" 삼각동 36-1"	1,209"	
4	" " 40-1"	2,852"	
5	" " 21-2"	861"	
6	" " 34"	1,331"	
7	" 수하동 35"	1,175"	
8	" " 7"	1,684"	
9	" 삼각동 25"	1,803"	
10	" 을지로2가 9-1"	5,781"	
11	" 삼각동 36-2"	553"	(분화제한지)
12	" 수하동 50"	4,127"	
13	" " 30"	3,433"	
14	" " 17"	3,218"	
15	" 을지로2가 36-1"	6,764"	
16	" 잠교동 39"	15,096"	
17	" 을지로2가 50-1"	6,920"	

2) 건축 계획

구분	지구명	면적	건수	연면적	높이	용도	비고	비고	비고
----	-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	----	----	----

구분	지명	대지면적	초면적	연면적	높이	단	비율	용적률	비고	
기정	16	1,996 [㎡]	759 [㎡]	12,786 [㎡]	58 [㎝]	상업	별첨도	38%	641%	
	17	2,634	1,054	14,012	24	"	"	40"	532"	
	18	4,064	1,731	25,965	44	"	"	43"	639"	
	19	1,144	570	7,980	47	"	"	30"	698"	
	20	2,225	826	17,794	72	"	"	37"	800"	
변경	16	15,096	-	-	102	"	"	40% 이하	700% 이하	3동
기정	21	3,748	1,782	24,677	47	"	"	48%	659%	
	22	3,539	1,435	24,446	54	"	"	41"	680"	
변경	17	6,920	-	-	95	"	"	40% 이하	790% 이하	

3) 도로 계획

구분	노선명	폭원	연장	기점	종점
신설	중로 2류 195호선	15 [㎝]	90 [㎝]	중구남대문로 1가 20	중구삼각동 105
	" 196"	15	192	" 수하동 1-1	" 을지로 2가 45-2
	중로 3류 140"	12	100	" 삼각동 59-1	" 삼각동 103-3
	" 141"	12	140	" " 105	" 수하동 12-2
	" 142"	12	75	" 수하동 102-2	" 을지로 2가 8
	" 143"	12	340	" 수하동 50	" " 74
	" 144"	12	60	" 을지로 2가 18-2	" " 13-2
	" 145"	12	130	" 삼각동 7-1	" 삼각동 30-1

4) 주차장 계획

명칭	위치	면적	비고
제1주차장	중구수하동 65일대	1,645	
제2 "	" 삼각동 110"	862"	
제3 "	" " 101"	709"	
계		3,216"	

나. 마포로제1구역제5지구 및 제16지구

1) 건축 계획

구분	제 5 지구		제 16 지구	
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
대지면적	3,879㎡	3,142.3㎡	1,875㎡	1,824.5㎡
건축면적	1,551㎡	-	750㎡	-
연면적	32,574㎡	-	15,750㎡	-
높이	55 (15/3)	15층이하	55 (15/3)	15층이하
용도	업무 및 중교 시설	업무시설	업무시설	업무시설
백업	별첨도면	전면도로에서 7㎡이상후퇴	별첨도면	전면도로에서 6㎡이상후퇴
건폐율	40%	45%이하	40%	45%이하
용적율	670%	670%이하	670%	670%이하

비 고 * 가분할축량 결과 대지면적의 감소

(제3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도시개발과장

제목 동 건

1. 서울도시재개발사업 을지로2가구역, 마포로제1구역제5지구 및 제16지구 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사본과 같이 변경 결정 되었기 보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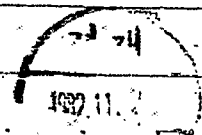
첨부: 1. 고시문 사본 및 회의록 각1부

2. 관계 도서 1부

(제4안)

수신 총무처장관, 공보관

제목 관(시)보 게 - 회



1. 다음 과 의 관(시)보 에 게재 의 하오 니 조 직 하 여 주 시 기

바 랐 니 다.

가. 관(시)보 게재 의 회: 구 시

나. 관(시)보 게재 건 명: 도시 재 개발 사업 계획 변경 결 정

다. 법 적 근 거: 도시 재 개발 법 제 5 조 및 동 법 시행 령 제 7 조

첨 부: 고 시 문 사 본 2 부

(제 5 안)

수 신: 중 구 청 장

참 조: 도시 정 비 과 장, 시 민 과 장

제 목: 동 건

1. 도시 재 개발 사업 을 지 로 2 가 구 역 에 대 한 사업 계획 이 별 첨 고 시 문 사 본 과 같 이 변경 결 정 되 었 기 통 보 하 니 업 무 에 참 조 하 기 바 라 며

2. 시 민 봉 사 실 에 비 치 하 여 토 지 소 유 자 및 이해 관 계 인 에 게 보 임 것 이 며 제 증 명 발 급 업 무 에 착 오 없 도 록 만 전 을 기 하 기 바 랐

첨 부: 1. 고 시 문 사 본 2 부

2. 관 계 도 서 2 부. 끝.

82.10.29

도·시·지·역·회·의·회

(182. 제3차도·시·지·역·회·의·회)

서울특별시도·시·지·역·회·의·회

김형만위원장 : 정 에 불응한 사람이 결국 이광트지구의 해제로
혜택을 잃는 결과가 되어 문제점이 있습니다.

위원장 : 본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된후 차기 회의
에서 심의하도록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?

일 동 : 동의 (보류)

(제 24 안)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일부변경결정.

간 사 : 제안설명 (생략)

김형만위원장 :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과 같이
조정할 경우 상보율은 얼마나 됩니까?

구획정리과장 : 58.5 %정도 됩니다.

위원장 : 별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.

일 동 : 동의 (원안가결)

(제 25 안) 도시계획마포로1구역 제 5, 16 지구사업계획변경결정

재개발과장 : 제안설명 (생략)

일 동 : 동의 (원안가결)

(제 26 안) 도시계획 을지로2기 재개발구역 사업계획변경

재개발과장 : 제안설명 (생략) . 조감도에 의한 보충설명 (생략)

일 동 : 동의 (원안가결)